

투자설명서 등 변경안내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효력발생일:** 2015년 12월 7일(월)

□ **대상 펀드**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

1.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I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 소득세법(연금계좌관련)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 (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p>	<p>I클래스 가입자격 정정</p>	<p>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u>,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삭제)</u>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u>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p><u>(환매수수료 표)</u></p> <p><u>- 종류 A, A-e, S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10%</u></p> <p><u>- 종류 C, C-e, C-w, I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 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 종류 C-P, C-P2, S-P : 없음</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u></p> <p><u>(삭제)</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환매수수료:</p> <p><u>- 종류 A, A-e, S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10%</u></p> <p><u>- 종류 C, C-e, C-w, I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 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 종류 C-P, C-P2, S-P : 없음</u></p>	<p>환매수수료: <u>해당사항 없음</u></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개정세법 반영</p>	<p>[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세액공제: 연간 400 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700 만원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u>(신설)</u></p>	<p>[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세액공제: 연간 400 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700 만원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u>단, 종합소득금액 4,0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u></p>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하생략)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I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 소득세법(연금계좌관련)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 (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p>	<p>I클래스 가입자격 정정</p>	<p>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u>,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삭제)</u>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4) 수익증권의 전환</p>	<p>환매수수료 삭제</p>	<p><u>⑤신탁계약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u></p> <p><u>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u></p> <p><u>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u></p>	<p><u>(삭제)</u></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u>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p><u>(환매수수료 표)</u></p> <p><u>- 종류 A, A-e, S :</u></p> <p><u>30 일 미만: 이익금의 10%</u></p> <p><u>- 종류 C1,C2,C3,C4, C-e, C-w, I :</u></p> <p><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p> <p><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 종류 C-P, C-P2, S-P : 없음</u></p> <p><u>*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 또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u></p> <p><u>(이하삭제)</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환매수수료: - <u>종류 A, A-e, S :</u>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 <u>종류 C1,C2,C3,C4, C-e, C-w, I :</u>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 <u>종류 C-P, C-P2, S-P : 없음</u></p>	<p>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개정세법 반영</p>	<p>[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세액공제: 연간 400 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700 만원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신설)</p>	<p>[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세액공제: 연간 400 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700 만원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4,0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p>
<p>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p>	<p>환매수수료 삭제</p>	<p>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하생략)</p>	<p>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하생략)</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p>	<p>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p>	<p>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p>	<p>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p>

3.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u>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 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 <u>(환매수수료 표)</u> <u>- 종류 A, A-e : 없음</u> <u>- 종류 C, C-e, C-w, I, S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u> <u>(이하삭제)</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환매수수료: <u>- 종류 A, A-e : 없음</u> <u>- 종류 C, C-e, C-w, I, S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환매수수료: <u>해당사항 없음</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u>있고, 이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u> (이하생략)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u>있습니다.</u> (이하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	--

4.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 (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 표) - 종류 A, A-e, S :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 종류 C-w, I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하삭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환매수수료: - <u>종류 A, A-e, S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10%</u> - <u>종류 C-w, I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환매수수료: <u>해당사항 없음</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u>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u> (이하생략)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u>있습니다.</u> (이하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u>경우는 제외</u>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u>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u>

5.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 (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u>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 <u>(환매수수료 표)</u> - 종류 A, A-e : 없음 - 종류 C, C-e, C-w, I, S :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u> <u>(이하삭제)</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환매수수료: - 종류 A, A-e : 없음 - 종류 C, C-e, C-w, I, S :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환매수수료: <u>해당사항 없음</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u>있고, 이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u> (이하생략)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u>있습니다.</u> (이하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u>투자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u>
--	--	-------------------------	--

6.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 (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 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 표) - 종류 A, A-e : 없음 - 종류 C, C-e, C-w, I, S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하삭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환매수수료: - 종류 A, A-e : 없음 - 종류 C, C-e, C-w, I, S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하생략)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 (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4) 수익증권의 전환</p>	<p>환매수수료 삭제</p>	<p><u>⑤신탁계약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 <u>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u></p> <p><u>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u> <u>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u></p>	<p>(삭제)</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u>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p><u>(환매수수료 표)</u></p> <p><u>- 종류 A, A-e, S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10%</u></p> <p><u>- 종류 C1,C2,C3,C4, C-e, C-w, I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 또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u></p> <p>(이하삭제)</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환매수수료: <u>- 종류 A, A-e, S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10%</u> <u>- 종류 C1,C2,C3,C4, C-e, C-w, I :</u>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환매수수료: <u>해당사항 없음</u></p>
<p>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하생략)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8.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I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 연간갱신
- 소득세법(연금계좌관련)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갱신		자료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 (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p>	<p>I클래스 가입자격 정정</p>	<p>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u>,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삭제)</u>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u>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u></p> <p><u>(환매수수료 표)</u></p> <p>- 종류 A, A-e, C-P, C-P2, S-P : <u>없음</u></p> <p>- 종류 C, C-e, C-w, I, S :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u></p> <p><u>(삭제)</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환매수수료: - 종류 A, A-e, C-P, C-P2, S-P : <u>없음</u></p> <p>- 종류 C, C-e, C-w, I, S :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환매수수료: <u>해당사항 없음</u></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연간 갱신</p>		<p><u>자료 업데이트</u></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 저축계좌 및 퇴직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개정세법 반영	[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세액공제: 연간 400 만원 이내 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700 만원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신설)	[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 - 세액공제: 연간 400 만원 이내 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700 만원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4,0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하생략)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p>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p>	<p>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p>
--	--	---	---

9.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삭제
- 연간갱신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갱신		자료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제 (2)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p>③ (생략)</p> <p>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p>	<p>③ (생략)</p> <p>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p>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p>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 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p> <p>(환매수수료 표)</p> <p>- 종류 A, A-e : 없음</p> <p>- 종류 C, C-e, C-w, I, S :</p> <p>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p> <p>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p>	<p>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p> <p>(삭제)</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환매수수료: - 종류 A, A-e : 없음 - 종류 C, C-e, C-w, I, S :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환매수수료: <u>해당사항 없음</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갱신		<u>자료 업데이트</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경우 판매회사는 신탁계약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하생략)	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 (2)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 사항 반영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p>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u>우는 제외</u></p>	<p>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u>투자운 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u></p>
--	--	---	---

집합투자규약 변경안내

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효력발생일** : 2015년 12월 7일(월)

□ **대상 펀드** :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1.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I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 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 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삭제)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제27조(환매가격및 환매방법) 제3항	환매수수료 삭제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다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p>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A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 2. 종류 A-e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 3. 종류 C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4. 종류 C-e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5. 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6. 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7. 종류 S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 8. 종류 C-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9.종류 C-P2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10. 종류 S-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p>③판매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도</p>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종류 C-P 및 종류 S-P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투자고객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 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 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 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 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⑦ 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신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한다. (이하생략)	
제25조(판매가격) 제1항	I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 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 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 외),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 하는 전문투자자</u> ,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 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 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 외), <u>(삭제)</u>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제25조의2 (수익증 권의 전환) 제5항	환매수수료 삭제	<u>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 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발생하는 경 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u> <u>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 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u> <u>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 서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u>	<u>(삭제)</u>
제27조(환매가격및 환매방법) 제3항	환매수수료 삭제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의의하여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u>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다</u>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의의하여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u>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 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u>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u>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 <u>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u>	<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 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u>

부과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

2. 종류 A-e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

3. 종류 C1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4. 종류 C2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5. 종류 C3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6. 종류 C4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7. 종류 C-e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8. 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9. 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10. 종류 S 수익증권: 30 일 미만 :

이익금의 10%

11. 종류 C-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12. 종류 C-P2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13. 종류 S-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③판매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제 52 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종류 C-P 및종류 S-P 의경

우에는“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정한바

에따라목적식투자고객등에대하여환매수

		<u>수료의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다.</u>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u>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u>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u>(신설)</u>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u>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u>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u>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조제2항제1호의</u>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3.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집합투자업자(<u>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u>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27조(환매가격및 환매방법) 제3항	환매수수료 삭제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p>환매대금에서 <u>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u>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환매대금에서 <u>관련세금</u>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p><u>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p> <p><u>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종류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 <u>2. 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 <u>3. 종류 C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4. 종류 C-e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5. 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6. 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7. 종류 S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p><u>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u>“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 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다.</u>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u>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u>(신설)</u>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u>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u>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u>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조제2항제1호의</u>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반영	1. 집합투자업자(<u>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u>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27조(환매가격및	환매수수료 삭제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

환매방법) 제3항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u>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u>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u>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u>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p><u>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p> <p><u>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p><u>1. 종류 A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10%</u></p> <p><u>2. 종류 A-e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10%</u></p> <p><u>3. 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4. 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5. 종류 S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10%</u></p> <p><u>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p>	<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u>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u>	<u>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u>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있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u>(신설)</u>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u>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u>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u>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조제2항제1호의</u>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집합투자업자(<u>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u>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27조(환매가격및 환매방법) 제3항	환매수수료 삭제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u>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u>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u>관련세금</u>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p>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2. 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 3. 종류 C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4. 종류 C-e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5. 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6. 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7. 종류 S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 <p>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	--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신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6.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27조(환매가격및 환매방법) 제3항	환매수수료 삭제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다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p>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종류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 2. <u>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 3. <u>종류 C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4. <u>종류 C-e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5. <u>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6. <u>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7. <u>종류 S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p>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p>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u>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u>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다.</u>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u>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u>(신설)</u>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u>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u>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u>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u>법제89조제2항제1호의</u>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7.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반영	1. 집합투자업자(<u>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u>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25조의2 (수익증권의 전환) 제5항	환매수수료 삭제	<u>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u>	(삭제)

		<p><u>징구하지 아니한다.</u></p> <p><u>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u></p> <p><u>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u></p>	
제27조(환매가격및 환매방법) 제3항	환매수수료 삭제	<p>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u>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u>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u>관련세금</u>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p><u>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p> <p><u>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p><u>1. 종류 A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u></p> <p><u>2. 종류 A-e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u></p> <p><u>3. 종류 C1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4. 종류 C2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5. <u>종류 C3 수익증권: 30 일미만:</u> <u>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u> <u>이익금의 30%</u></p> <p>6. <u>종류 C4 수익증권: 30 일미만:</u> <u>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u> <u>이익금의 30%</u></p> <p>7. <u>종류 C-e 수익증권: 30 일미만:</u> <u>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u> <u>이익금의 30%</u></p> <p>8. <u>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u> <u>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u> <u>이익금의 30%</u></p> <p>9. <u>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u> <u>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u> <u>이익금의 30%</u></p> <p>10. <u>종류 S 수익증권: 30 일 미만 :</u> <u>이익금의 10%</u></p> <p><u>③판매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제 52 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에정한바에따라목적식투자 고객등에대하여환매수수료의부과를면제 할수있다.</u></p>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 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 니한다.</u>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 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다.</u>
제45조(집합투자기 구의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u>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u>(삭제)</u>
제49조(금전차입등 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 항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 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 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뺀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 의 100분의 10</u>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신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 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	---	---

8.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25조(판매가격)제1항	I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삭제)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제27조(환매가격및환매방법) 제3항	환매수수료 삭제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u>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p> <p><u>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p><u>1. 종류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p> <p><u>2. 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p> <p><u>3. 종류 C 수익증권: 30 일미만:</u> <u>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u> <u>이익금의 30%</u></p> <p><u>4. 종류 C-e 수익증권: 30 일미만:</u> <u>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u> <u>이익금의 30%</u></p> <p><u>5. 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u> <u>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u> <u>이익금의 30%</u></p> <p><u>6. 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p> <p><u>7. 종류 S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u></p> <p><u>8. 종류 C-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p> <p><u>9.종류 C-P2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p> <p><u>10.종류 S-P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p> <p><u>③판매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제 52 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종류 C-P 및종류 S-P 의경우에는“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정한바에따라목적식투자고객등에대하여환매수수료의부과를면제할수있다.</u></p>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p><u>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u></p>	<p><u>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다.</u></u></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신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9.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반영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27조(환매가격및 환매방법) 제3항	환매수수료 삭제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p><u>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u> <u>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u></p> <p><u>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u></p> <p><u>1. 종류 A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 <u>2. 종류 A-e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없음</u> <u>3. 종류 C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4. 종류 C-e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5. 종류 C-w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6. 종류 I 수익증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u>7. 종류 S 수익증권: 30 일미만 : 이익금의 10%</u></p> <p><u>③판매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제 52 조의규정에의한“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에정한바에따라목적식투자 고객등에대하여환매수수료의부과를면제 할수있다.</u></p>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항	환매수수료 삭제	<p><u>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 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u></p>	<p><u>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 부터 1월이내 판매회사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u>청구할 수 있다.</u></u></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해지)	환매수수료 삭제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신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0.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0조(한도및제한의예외)제4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반영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제49조(금전차입등의제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액의 투자신탁 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및보고서등) 제7항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신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⑦제5항 및 제6항의..(중도생략)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	---	--